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2022. 5. 4.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 정 근

검 사 활 동 경 과

□ 검사개요

○ 검사기간: 2022. 4. 15.(금) ~ 5. 4.(수)

- 교육청: 4. 26. ~ 5. 4.(9일) / 도청: 4. 15. ~ 4. 25.(11일)

○ 검사장소: 충청남도교육청 7층 제7회의실, 교육지원청 5곳 검사장

○ 검사위원: 14명

- 도의원 3, 공인회계사 2, 세무사 2, 전직공무원 3, 예산회계전문가 4

○ 검사대상: 2021회계연도 결산서(예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결산 첨부서류 등

□ 검사개시

일 시		내 용	장 소	비 고
4.26. (화)	10:30~11:00	○ 검사개시 선언	제7회의실	대표위원
		○ 인사 및 간부소개		행정국장
		○ 결산 개요 설명		재무과장
	11:00~	○ 결산검사 시작		
4.26.(화) ~ 5.4.(수)		○ 결산검사(기간 중 7일)	제7회의실 교육지원청 5곳	

결산과정 (출납폐쇄부터 의회 결산승인까지)

일 시	내 용	세부내용	비 고
12. 31.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	· 지출원인행위의 마감 · 세출금의 정산지출: 개산금, 선금급(사고이월 시) · 지출원이 지출한 세출금의 반납 · 세입세출집행오류과목의 경정 · 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 출납원의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1. 10.	이월 결정	·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1. 20.	예외적인 출납	· 예외적인 경우, 수입·지출처리(「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결산승인 신청 시 첨부할 최종잔액 증명발행	
2. 10.	출납사무 마감	· 제반 장부 마감, 계산증명서류의 정리 등	
2. 11. ~ 3. 21.	결산서 작성	· 결산서 교육감 보고	
4. 15. ~ 5. 4.	결산검사 활동	·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활동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3.21.~5. 21. 중 4.15~5.4.(20일간) 실시	
5. 21.	결산승인 요청	· 교육감, 해당 지자체 의회에 결산승인 요청 · 의장(의회사무처),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접수, 각 의원 배포	
6. 8 ~ 6. 22	정례회	· 결산승인 ·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및 심사보고서 예결위 송부 · 예결위 결산 종합심사 및 심사보고서 본회의 보고 · 본회의 '결산승인'의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부대의견 등 첨부 집행부 이송	

검사위원 별 검사분야

검사분야	담당 검사위원	비 고
1. 예산총칙 차입금, 이용, 기능별 결산	· 외부전문가	- 예산관계법, 제도 및 원칙, 편성 및 심의, 집행 및 결산의 예산 과정 등 예산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2. 세입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전입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기타이전 -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 세입징수 및 체납관리 등	· 징세업무수행 전직공무원, · 세무사	
3. 세출 (1) 주요사업(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사업포함) (2) 민간 보조·위탁·투자 사업 (3) 출자·출연 사업 (4) 위원회 운영 (5) 행사성 사업 (6) 교육시설 등의 설치관리 (7) 사고이월 (8) 순세계잉여금(집행잔액)	· 외부전문가	- 예산관계법, 제도 및 원칙, 편성 및 심의, 집행 및 결산의 예산 과정 등 예산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4. 계속비	· 외부전문가	- 예산관계법, 제도 및 원칙, 편성 및 심의, 집행 및 결산의 예산 과정 등 예산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검사분야	담당 검사위원	비 고
5. 명시이월비	· 외부전문가	- 예산관계법, 제도 및 원칙, 편성 및 심의, 집행 및 결산의 예산 과정 등 예산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6. 채무부담행위	· 외부전문가	"
7. 예비비	· 외부전문가	"
8. 성과보고서	· 외부전문가	"
9. 성인지 결산	· 성인지전문가	
10.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 외부전문가	
11. 결산 첨부자료 (1) 채권 및 채무 (2) 공유재산 (3) 물품	· 공인회계사	
12. 금고	· 공인회계사, · 외부전문가	
13.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14. 기금	· 공인회계사 · 외부전문가	*성인지기금은 성인지 전문가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이 정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관련 증빙서류, 관 직원의 설명 등을 토대로 2022년 4월 26일부터 2022년 5월 4일까지(9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제도 개선 등 의견은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4일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 정 근
검사위원	정 광 섭
검사위원	여 운 영
검사위원	배 상 열
검사위원	송 지 완
검사위원	문 중 현
검사위원	주 을 규
검사위원	노 광 빈
검사위원	박 중 진
검사위원	김 인 철
검사위원	김 현 희
검사위원	김 희 경
검사위원	정 영 제

I . 결 산 개 요

1. 일반현황 9

2. 회계현황 10

3. 세입세출결산 10

4. 기금결산 13

5. 재무제표 13

(이상 집행부 제출 자료)

II . 교육비특별회계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중심인 결산승인 및 예산심의와의 연계를 위하여 예산의 구성 체계를 토대로 목차를 구성함

**참고: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1. 예산총칙 17

2. 세입세출 18

가. 세입 18

1) 그외수입 중 초과근무수당 환수액 과다 19

<검사의견 1> 19

나. 세출 20

1)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20

2) 국외출장 등 외화지출사업 집행현황 22

<검사의견 2> 24

<검사의견 3> 26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현황 27

<검사의견 4> 28

4) 권역별영어프로그램 운영 개선 29

<검사의견 5> 29

5) 교육지원청 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타당성 조사	30
<검사의견 6>	31
6) 방과후 등 교육지원 개선	32
<검사의견 7>	32
7) 민간위탁사업 운영	34
3.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35
4. 계속비	36
5. 명시이월비	36
<검사의견 8>	37
<검사의견 9>	39
6. 채무부담행위	41
7. 예비비	41
8. 성과보고서	42
<검사의견 10>	43
<검사의견 11>	48
9. 성인지 결산	49
<검사의견 12>	49
Ⅲ. 기금	57
<검사의견 13>	57
Ⅳ. 개선권고 사항 목록	59

I. 결 산 개 요

1. 일반현황

가. 행정조직과 공무원 등 현황

- 행정조직은 3국 1담당관 1관 14과의 본청과 하위 행정기관으로 12개 직속기관 및 14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렬별 공무원 등 현황은 31,834명으로 아래 표와 같음

<직렬별 공무원 등 현황>

(단위: 명)

계	정무직	특정직(교육)	일반직	교육공무직
31,834	1	19,884	3,942	8,007

※ 2021. 4. 1. 교육통계연보 기준

※ 특정직(교육) 현황에 기간제 교원 포함, 별정직은 일반직에 포함하여 작성

나. 학교현황

- 학교수는 유치원 374개원, 초등학교 411교, 중학교 183교, 고등학교 116교, 특수학교 9교, 기타학교 8교 등 총 1,101교가 있으며, 학교급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육공무직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학교급별 학교현황 >

(단위: 교, 학급, 명)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육공무직원수
유 치 원	374	717	8,802	1,299	74	403
초등학교	411	6,004	118,269	9,339	1,349	4,180
중 학 교	183	2,303	59,333	5,148	520	1,440
고등학교	116	2,391	56,174	5,667	577	1,274
특수학교	9	226	1,127	446	59	234
기타학교	8	43	929	50	13	31
합 계	1,101	11,684	244,634	21,949	2,592	7,562

※ 2021. 4. 1. 교육통계연보 기준

※ 국립 유·초·중·고와 사립유치원은 제외, 학교수에서 분교는 제외(학급수 등은 본교에 포함)

※ 기타학교 8교 : 방송통신고(2), 방송통신중(2), 풀무농고(1), 각종학교(3)

2. 회계현황

〈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 현황 〉

구 분	설치 근거	설치목적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방재정법」 제9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지방자치법」 제159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통폐합(신설대체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3.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4,130억 6천만 원이고 총 세출은 4조 2,509억 6천 2백만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620억 9천 8백만 원임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입 ①	세출 ②	세계잉여금 ③=①-②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실제 반납예정액		지 교 육 상 채 환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납액	교부 차액		
예 산 액	4,194,904	4,194,904	162,098	117,077	1,956	0	0	43,065
예산현액	4,390,052	4,390,052						
결 산 액	4,413,060	4,250,962						

- 최근 3년간 세입은 연평균 0.3% 증가하고 세출은 2.2%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7% 증가함

〈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연도	세입 ①	세출 ②	세계잉여금 ③=①-②					
			소계	이월금	보조금 반납액		지교 육상	방 채 환
					보조금 반납액	실제 교부 채액		
2021	4,413,060	4,250,962	162,098	117,077	1,956	0	0	43,065
2020	4,053,484	3,783,200	270,284	195,149	838	0	33,205	41,092
2019	4,385,158	4,071,427	313,731	283,665	0	0	0	30,066
3년 평균증가율	0.3	2.2	△28.1	△35.8	0.0	0.0	0.0	19.7

나.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

○ 2021회계연도 세입은 4조 4,130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95억 7천 6백만 원(8.9%) 증가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4,616억 3천 2백만 원(14.7%) 증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대비 91억 4천만 원(1.8%) 증가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39억 9천 1백만 원(45.2%) 감소
-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772억 8천만 원(24.6%) 감소

○ 총 세입비중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1.8%이며, 자체수입은 0.9%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전년대비 (%)	2021	전년대비 (%)
합 계	4,385,158	4,053,484	△7.6	4,413,060	8.9
이전수입	3,906,662	3,664,007	△6.2	4,134,854	12.9
중앙정부이전수입	3,436,414	3,149,488	△8.3	3,611,120	14.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6,150	509,466	9.3	518,606	1.8
기타이전수입	4,098	5,053	23.3	5,128	1.5
자체수입	74,482	75,118	0.9	41,127	△45.2
교수-학습활동수입	34,101	32,415	△4.9	152	△99.5
행정활동수입	1,759	485	△72.4	472	△2.7
자산수입	13,172	19,873	50.9	15,293	△23.0
이자수입 등	25,450	22,345	△12.2	25,210	12.8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404,014	314,359	△22.2	237,079	△24.6

2)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

- 2021회계연도 세출은 4조 2,509억 6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677억 6천 2백만 원(12.4%) 증가함
 -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대비 1,438억 원(7.6%)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대비 1,104억 4천 5백만 원(42.4%) 증가
 - 교육복지지원은 전년대비 515억 2천 6백만 원(14.7%) 감소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대비 111억 4천 3백만 원(21.9%) 증가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대비 247억 9천 6백만 원(3.9%) 증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대비 992억 1백만 원(28.2%) 증가
 - 평생교육은 전년대비 36억 6천 7백만 원(50.5%) 증가
 - 교육행정일반은 전년대비 1,335억 5천 5백만 원(111.8%) 증가
 - 기관운영관리는 전년대비 4억 5천 5백만 원(0.7%) 증가
 -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대비 89억 3천 5백만 원(20.8%)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1억 6천 1백만 원(13.9%) 증가
- 총 세출비중은 인적자원운용이 4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교재정지원 관리 15.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6%, 교수학습활동지원 8.7%, 교육 복지지원 7.0%, 교육행정일반 6.0%임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전년대비 (%)	2021	전년대비 (%)
합 계	4,071,427	3,783,200	△7.1	4,250,962	12.4
인적자원운용	1,942,031	1,890,068	△2.7	2,033,868	7.6
교수-학습활동지원	258,220	260,697	1.0	371,142	42.4
교육복지지원	299,082	351,114	17.4	299,588	△14.7
보건/급식/체육활동	31,454	50,899	61.8	62,042	21.9
학교재정지원관리	552,493	638,239	15.5	663,035	3.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18,232	352,368	△15.7	451,569	28.2
평생교육	8,170	7,255	△11.2	10,922	50.5
교육행정일반	62,203	119,510	92.1	253,065	111.8
기관운영관리	84,763	61,635	△27.3	62,090	0.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06,597	43,036	△89.4	34,101	△20.8
예비비및기타	8,183	8,379	2.4	9,540	13.9

4. 기금결산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소계①-②	조성액①	사용액②	
계	138,817	139,551	144,830	5,279	278,368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65	142,795	142,795	0	206,960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4,652	△3,244	2,035	5,279	71,408

5. 재무제표

가. 재무제표 요약

- (재정상태) 2021회계연도 총자산은 5조 6,990억 8천 5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1,287억 3천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5,703억 5천 5백만 원임
- (재정운영 결과) 2021회계연도 총수익은 4조 3,592억 7천 1백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9,456억 3천 3백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136억 3천 8백만 원임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1	5,699,085	128,730	5,570,355	4,359,271	3,945,633	413,638
2020	5,360,800	204,083	5,156,717	3,872,493	3,619,480	253,013
증감	338,285	△75,353	413,638	486,778	326,153	160,625

나. 재무제표 분석

1)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 (자산) 2021회계연도 총자산은 5조 6,990억 8천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382억 8천 5백만 원(6.3%)이 증가함

-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229억 3천 5백만 원(5.5%) 증가
 - 투자자산은 전년대비 17억 4천만 원(2.4%) 증가
 - 유형자산은 전년대비 3,124억 3천 9백만 원(6.4%) 증가
 - 무형자산은 전년대비 13억 6천 1백만 원(34.8%) 감소
 - 기타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25억 3천 2백만 원(92.9%) 증가
- (부채) 2021회계연도 총부채는 1,287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753억 5천 3백만 원(36.9%)이 감소함
-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658억 3천 9백만 원(74.7%) 감소
 - 장기차입부채는 전년대비 157억 1천 5백만 원(13.6%)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62억 1백만 원(892.2%) 증가
- (순자산) 2021회계연도 순자산은 5조 5,703억 5천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36억 3천 8백만 원(8%)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유동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전년대비 (%)	2021	전년대비 (%)
자 산(①)	5,137,378	5,360,800	4.3	5,699,085	6.3
유동자산	355,570	414,846	16.7	437,781	5.5
투자자산	136,045	73,791	△45.8	75,531	2.4
유형자산	4,634,019	4,865,524	5	5,177,963	6.4
무형자산	4,991	3,913	△21.6	2,552	△34.8
기타비유동자산	6,753	2,726	△59.6	5,258	92.9
부 채(②)	233,674	204,083	△12.7	128,730	△36.9
유동부채	32,184	88,134	173.8	22,295	△74.7
장기차입부채	193,893	115,254	△40.6	99,539	△13.6
기타비유동부채	7,597	695	△90.9	6,896	892.2
순자산(①-②)	4,903,704	5,156,717	5.2	5,570,355	8

2)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 (수익) 2021회계연도 총수익은 4조 3,592억 7천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867억 7천 8백만 원(12.6%) 증가함
 - 이전수익은 전년대비 5,158억 3천 3백만 원(13.7%) 증가
 - 자체수익은 전년대비 275억 6천만 원(81.6%) 감소
 - 기타수익은 전년대비 14억 9천 5백만 원(2%) 감소
- (비용) 2021회계연도 총비용은 3조 9,456억 3천 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261억 5천 3백만 원(9%) 증가함
 - 인적자원운용비용은 전년대비 1,501억 7천만 원(8%)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비용은 전년대비 863억 2천 9백만 원(36.7%) 증가
 - 교육복지지원비용은 전년대비 513억 2천 1백만 원(14.6%) 감소
 - 보건급식체육활동비용은 전년대비 113억 2천 1백만 원(27.6%) 증가
 - 학교재정지원관리비용은 전년대비 160억 9천 9백만 원(2.5%) 증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용은 전년대비 432억 3천 7백만 원(75%) 증가
 - 평생교육비용은 전년대비 22억 2천 5백만 원(60.3%) 증가
 - 교육행정일반비용은 전년대비 546억 8천만 원(176.1%) 증가
 - 기관운영관리비용은 전년대비 23억 5천 3백만 원(14.8%) 증가
 -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비용은 전년대비 9억 5천 8백만 원(10.2%) 감소
 - 기타비현금지출비용은 전년대비 123억 8천 7백만 원(3.5%) 증가
 - 교육복지지원(기금)비용은 전년대비 3억 6천 9백만 원(6.5%) 감소
- (운영차액) 2021회계연도 운영차액은 4,136억 3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606억 2천 5백만 원(63.5%)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이전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전년대비 (%)	2021	전년대비 (%)
수 익(①)		4,187,453	3,872,493	△7.5	4,359,271	12.6
	이전수익	3,972,756	3,763,131	△5.3	4,278,964	13.7
	자체수익	36,593	33,757	△7.8	6,197	△81.6
	기타수익	178,104	75,605	△57.6	74,110	△2.0
비 용(②)		3,568,396	3,619,480	1.4	3,945,633	9.0
	인적자원운용	1,936,134	1,881,887	△2.8	2,032,057	8.0
	교수-학습활동지원	234,207	235,064	0.4	321,393	36.7
	교육복지지원	298,714	350,892	17.5	299,571	△14.6
	보건/급식/체육활동	19,024	41,043	115.7	52,364	27.6
	학교재정지원관리	547,620	634,785	15.9	650,884	2.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444	57,664	△30.9	100,901	75.0
	평생교육	4,728	3,687	△22.0	5,912	60.3
	교육행정일반	30,362	31,057	2.3	85,737	176.1
	기관운영관리	17,627	15,857	△10.0	18,210	14.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674	9,361	△36.2	8,403	△10.2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81,862	352,535	△7.7	364,922	3.5
	교육복지지원(기금)	0	5,648	0.0	5,279	△6.5
운영차액(①-②)		619,057	253,013	△59.1	413,638	63.5

(이상 집행부 제출 자료)

Ⅲ. 교육비특별회계

1. 예산총칙

[참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40조(예산의 내용)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총칙은 법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총칙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법규적 성질을 갖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4,194,903,746천원으로 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3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202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37,880,985천원으로 한다.

제6조 2021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06,640,014천원으로 한다.

제7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건비
2.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교원 인건비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

제8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2. 세입세출

가. 세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
합 계	4,390,052	4,413,330	4,413,060	1	269	99.99
이전수입	4,110,507	4,134,854	4,134,854	0	0	10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596,810	3,611,120	3,611,120	0	0	10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09,526	518,606	518,606	0	0	100.00
기타이전수입	4,171	5,128	5,128	0	0	100.00
자체수입	42,466	41,397	41,127	1	269	99.35
교수-학습활동수입	177	153	152	1	0	99.35
행정활동수입	340	472	472	0	0	100.00
자산수입	14,153	15,293	15,293	0	0	100.00
이자수입	2,501	2,797	2,797	0	0	100.00
금융자산회수	7,071	7,091	7,091	0	0	100.00
기타수입	18,224	15,591	15,322	0	269	98.27
기타	237,079	237,079	237,079	0	0	100.00
전년도이월금	237,079	237,079	237,079	0	0	100.00

- 징수결정액 4조 4,133억 3천만 원 대비 수납액은 4조 4,130억 6천만 원으로 99.9%를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백만 원, 미수납액은 2억 6천 9백만 원임
-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6,111억 2천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11.8%, 자체수입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년도이월금은 2,370억 7천 9백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5.4%임

1) 그외수입 중 초과근무수당 환수액 과다(소관: 교원인사과, 총무과)

□ 현황

(금액단위: 원)

구 분	환수액	비고
본 청	31,098,040	관할학교 포함
교육지원청	52,053,230	관할학교 포함
직 속 기 관	773,010	
합 계	83,924,280	

□ 문제점

- 위 현황과 같이 기타수입 중 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과다지급액을 환수하고 있는 실정임
- 각 기관(부서)에서 초과근무 확인 오류와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점사의견 1>

- 각 기관(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규정 및 착오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확인과 점검으로 부당하게 과다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나. 세출

1) 부서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부서(기관)명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 내역				불용액*	불용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계		
소통담당관	1,309	1,302	0	0	0	0	7	0.53%
감사관	676	668	0	0	0	0	8	1.13%
정책기획과	10,660	10,636	0	0	0	0	24	0.22%
교육혁신과	75,312	62,618	0	0	12,606	12,606	88	0.12%
예산과	1,762,786	1,754,283	1,203	239	0	1,441	7,061	0.40%
학교지원과	16,018	14,911	0	0	1,030	1,030	77	0.48%
교육과정과	324,035	316,319	0	0	5,320	5,320	2,397	0.74%
교원인사과	53,429	53,083	0	0	0	0	347	0.65%
민주시민교육과	31,495	31,408	11	0	0	11	76	0.24%
미래인재과	161,959	124,957	3,160	1,637	32,150	36,946	55	0.03%
체육건강과	73,483	72,063	415	0	60	475	946	1.29%
총무과	319,211	316,839	0	0	0	0	2,373	0.74%
행정과	363,811	363,572	0	0	0	0	239	0.07%
재무과	33,309	33,244	0	0	0	0	65	0.20%
시설과	90,581	72,130	10,976	446	5,765	17,187	1,263	1.39%
안전총괄과	37,381	37,023	0	0	212	212	147	0.39%
본청 계	3,355,456	3,265,055	15,764	2,321	57,143	75,228	15,172	0.45%
연구정보원	11,599	11,497	0	0	0	0	101	0.87%
교육연수원	4,128	4,115	0	0	0	0	13	0.31%
학생교육문화원	2,367	2,349	0	5	0	5	14	0.57%
평생교육원	1,736	1,730	0	0	0	0	6	0.34%
총무교육원	528	527	0	0	0	0	1	0.23%
안전수련원	1,237	1,236	0	0	0	0	0	0.02%
해양수련원	1,632	1,612	0	0	0	0	21	1.27%
남부평생교육원	1,627	1,413	208	0	0	208	6	0.36%
서부평생교육원	1,562	1,553	0	0	0	0	9	0.61%
과학교육원	4,362	4,235	113	0	0	113	14	0.31%
국제교육원	1,899	1,876	16	0	0	16	7	0.37%
유아교육원	1,637	1,627	0	0	0	0	10	0.61%
직속기관 계	34,313	33,769	337	5	0	342	202	0.59%

부서(기관)명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 내역				불용액*	불용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계		
천안	219,000	205,111	203	344	9,742	10,288	3,601	1.64%
공주	52,416	49,897	1,363	436	197	1,996	523	1.00%
보령	58,921	57,450	1,375	34	0	1,408	62	0.11%
아산	168,885	159,078	267	0	9,098	9,365	442	0.26%
서산	83,969	76,376	798	0	6,683	7,481	112	0.13%
논산계룡	76,367	75,663	208	0	226	434	269	0.35%
당진	79,559	76,058	1,446	0	1,928	3,374	127	0.16%
금산	37,922	34,821	2,139	430	0	2,570	532	1.40%
부여	37,959	37,834	0	0	0	0	125	0.33%
서천	32,209	31,745	81	0	258	340	124	0.38%
청양	21,443	21,269	0	0	0	0	174	0.81%
홍성	57,017	56,887	0	0	0	0	130	0.23%
예산	40,777	40,453	0	0	0	0	324	0.79%
태안	33,839	29,495	3,417	104	729	4,250	94	0.28%
지역 계	1,000,283	952,137	11,297	1,348	28,862	41,507	6,639	0.66%
합계	4,390,052	4,250,962	27,398	3,674	86,005	117,077	22,013	0.50%

*불용액: 보조금반납예정액 1,956백만 원이 포함된 값이며, 보조금반납예정액 제외 시 불용률은 0.46%(20,057백만 원)

2) 국외출장 등 외화지출사업 집행현황

참고자료

[참고사항]

교육전문직원 국외연수사업(2019~2020년)

○ 관련 근거 및 목적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 교육전문직원 국외연수출장 개요

- 인원: 78명(타기관 주관 교육전문직 9명 미포함)
- 기간: 3박 4일부터 9박 10일까지
- 대상: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 목적: 교원 대상 국외체험연수 및 국외봉사연수 사전 답사 및 연수 업무 추진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추진사항(2019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운영개요

- 선발인원: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119명 선발(총무과 추진 연수 이외 기타 연수 포함)
- 연수기간: 2019년 중 9박 10일 내외
- 대 상: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 연수목적
 - 선진국의 우수 교육행정 제도 및 정책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 수집
 - 운영 실태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충남교육행정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
 - 국외 연수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의식변화 및 국제적 감각과 안목 배양 등 업무 혁신 역량 제고
 -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로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으로 미래를 여는 충남 교육 실현

[교육전문직]

2019년도 교육전문직원 국외연수 출장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내 용(기간)	인원(명)	국가	지출액	비 고
합 계 (26건)		67		217,736	
1	2019년도 인사담당 해외교육체험연수 (2019.10.12~2019.10.19.)	6	뉴질랜드	24,744	교원인사과
2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국외실태조사 (2019.01.05.~2019.01.14)	3	프랑스 외 2국	13,500	교육과정과

구분	내 용(기간)	인원(명)	국가	지출액	비 고
3	특수교육 전문가 해외연수 인솔 및 업무 (2019.05.02.~2019.05.08)	2	영국	9,700	
4	2019 창의융합형 인문학기행 답사 (2019.05.18.~2019.05.22)	3	중국	9,330	
5	예술교육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2019.06.26.~2019.07.03)	2	핀란드 외 1국	7,680	
6	교육과정일체화 국외체험직무연수 (2019.08.06.~2019.08.14)	3	영국 외 1국	11,346	
7	수능제도 및 대입전형 선진사례 탐방 직무연수 (2019.01.26.~2019.02.03.)	2	미국	10,000	교육혁신과
8	시도교육청 자유학기 담당자 공무 국외 조사 (2019.02.10.~2019.02.18.)	1	스웨덴 외 2국	8,920	
9	중등교장 자격연수과정 국외체험연수 (2019.05.04.~2019.05.10.)	1	스위스 외 1국	4,460	
10	미래 신기술 연계 진로교육 혁신연수 (2019.06.03.~2019.06.13.)	2	프랑스 외 1국	10,000	
11	진로진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체험 연수 (2019.07.22.~2019.07.29.)	3	독일 외 1국	11,304	
12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국외체험연수 (2019.10.22.~2019.10.25)	3	대만	3,960	
13	더퍼린 필 카톨릭교육청 업무협약 지원 (2019.04.06.~2019.04.14)	3	캐나다	8,399	미래인재과
14	2019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2019.10.27.~2019.11.02)	3	라오스	4,255	
15	다우리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전답사 (2019.06.04.~2019.06.07)	1	베트남	1,549	
16	2019 한중 국제교류 방중 프로그램 (2019.07.01.~2019.07.05)	1	중국	857	
17	2019 미래교육 혁신리더십 학교장 연수 (2019.09.19.~2019.09.28)	5	핀란드 외 2국	23,911	
18	2019년도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중간점검 (2019.10.10.~2019.10.19)	2	호주	4,864	
19	2019 상상이룸교육 역량강화 국외체험연수 (2019.11.07.~2019.11.10)	2	중국	2,036	
20	NCS 기반 해외교육기관 연수 (2019.12.11.~2019.12.19)	1	호주	5,343	
21	2019 학교폭력담당장학사 국외연수 (2019.02.14. ~2019.02.21)	1	호주 외 1국	4,340	민주시민교육과
22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학생 국외체험연수 (2019.08.09.~2019.08.17)	3	독일 외 2국	11,638	
23	학교폭력예방유공국외체험연수 (2019.08.05.~2019.08.09)	4	싱가폴	6,500	
24	제14회 그린보트 선상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2019.12.07.~2019.12.14)	2	대만	6,000	정책기획과
25	영양교육 전문가 연수 (2019.07.29.~2019.08.05)	2	캐나다	5,000	체육건강과
26	베트남의 스포츠 문화탐구와 역사기행 (2019.12.09.~2019.12.13)	6	베트남	8,100	

2020년도 교육전문직원 국외연수출장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내 용	인원(명)	국가	지출액	비 고
합 계 (2건)		11		6,416	
1	2019 교권보호 활동 교원 해외교육체험연수 (2020.01.10.-2020.01.17)	2	독일	6,416	
2	교육봉사형 국외체험연수 사고 수습 (팀별 일정 상이)	9	네팔	0	출장 여비 지급

* 2020.1.17.자 이후 국외 출장 없음(코로나19 발생으로 국외 연수 전면 중단)

〈검사의견 2〉 교육활동 선진국 장기연수 적극 추진 - 교육전문직원 (소관: 교원인사과)

(현황) 충남교육청은 2019년 회계연도의 경우 해외교육체험연수, 교육과정 국외실태 조사, 진로진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 미래교육 혁신리더십 학교장 연수, 평화 통일민주시민교육 학생 국외체험연수 등 총 67건의 프로그램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의 경우 교권보호 활동 해외교육체험연수 등 2건의 프로그램에 600만 원 상당을 집행하였으나, 2020.1.17. 이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외연수가 전면 중단되어 실적이 없음

(문제점) 이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원 및 교육 연구사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연수 등 기간이 4일에서 10일 등으로 지극히 단기여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교육자치 역량의 제고에는 크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검사의견)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단기 국외 연수사업에 일선 교사도 그 대상에 포함하여 적정규모로 계속 추진하면서, 연수 등 그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2. 1. 13)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국제교류 및 협력) 가목(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목(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등 신설된 해외사무와, 이를 위한 동법 제194조(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등 새로운 지방자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자치 공무원들의 해외사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자치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교육관련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의회위원의 해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설계 시 그 대상국을 영국 및 미국 등 지방교육자치 선진국으로 하고, 기간도 최소 1년 이상(회계연도 및 회기 1년 고려)의 장기 연수로 하며, 연수 대상 선발 시 10년 내외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각각 대상국별 적어도 1명 이상)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참고> **재원조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충청남도교육청은 200억 5천 7백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중 일정액을 장기 국외장기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계상할 수 있을 것임

[지방공무원]

2019년도 국외출장 실적

(단위 : 천원)

순	건명 (시행일)	인원	국가	예산액	지출액	활동 목적 및 내용
1	2019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5.15.~5.24.)	24	미국, 캐나다 (충무과주관)	257,600	63,144	- 미국·캐나다 교육제도 및 교육활동 탐구를 통한 교육발전 방안 연구 · 교육 혁신과 교육정보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외 교육기관 방문 (비영리 방과후 교육단체, 커리큘럼 우수 고교) · 생활, 문화, 역사를 통해 교육 시스템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찾아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 모색 ·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동향 파악 - 해외 문화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제고로 교육행정 역량 강화 · 연수국 문화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해하여 교육행정 역량 강화 · 문화적 다수 집단이 존재하는 미주 지역에서 한인들이 발자취를 느끼고, 이들이 공존해 살아 가며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을 이해하고 애국심 고취
2	2019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5.16.~5.25.)	23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충무과주관)		63,503	- 모두가 평등한 참행복의 교육선진국 북유럽의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구현 - 국외 교육현장 체험을 통한 국제적 교육감각 제고 및 전문성 강화로 지방공무원의 글로벌마인드를 제고하고 자기계발 기회 부여
3	2019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5.31.~6.8.)	25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충무과주관)		65,700	- 해외의 우수한 방과후학교 운영사례를 체험하고 분석하여 충남교육에 적합한 지원 방안 모색 · 창의력을 존중하는 교육 중시 · 과외 활동을 통해 자신감, 자존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삼음 ·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특별 활동 프로그램 등 체험

순	건명 (시행일)	인원	국가	예산액	지출액	활동 목적 및 내용
4	2019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6.13.~6.22.)	23	호주, 뉴질랜드 (총무과주관)		59,639	-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선진 교육제도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단점을 구별하여 교육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기회 제공 - 충남 5대 교육행정의 일환으로 공교육 혁신, 마을 교육활성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남 마을교육체」가 수립됨으로써, 방문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충남교육에 맞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방문국의 교육환경을 통해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행정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5	학교시설 선진화 국외연수 (5.19.~5.25.)	20	싱가포르, 홍콩 (시설과주관)	56,000	54,657	- 해외 선진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시설 사례 견학 및 탐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교육 시설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9개 기관 방문) - 학교시설 핵심 이슈와 연계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례, 미래 교육에 대비한 새로운 학교 공간 구축 사례 탐방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시설 개선 정책 방향 탐색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통합 학교 구축 과정 및 공간 활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미래형 학교 모델 검토
6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담당자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6.2.~6.8.)	2	덴마크 (교육부주관)	9,980	9,980	- 방문국의 국가 수준에서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 운영방식 파악 - 시·도교육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보조 및 배분 등 선진 예산편성 운용 방법 도입 - 방문국의 학교방문을 통해 단위 학교의 교육재정 운영 방식과 관리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정부, 지역청, 학교 수준에서 학교 재정 배분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 - 교육생산성 제고를 위한 학교재정 배분 방식에 대한 벤치마킹 - 방문국의 교육부, 지역교육청, 초·중등학교 등 국외 교육 현장 방문 체험
7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해외사례연구 (6.5.~6.13.)	2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주관)	66,000	8,480	- 공무원 노사 핵심관계자들의 노사관계 실무능력 배양 및 선진국의 노사협력모델 체험을 통해 현장의 각종 노사문제를 자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선진국의 고용복지 및 노사관계 모델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함
합계 (7건)					325,103	

* 2020년~2021년 국외 출장 없음(코로나19 발생으로 국외 연수 전면 중단)

〈점사의견 3〉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연수 적극 추진 - 지방공무원(소관: 총무과)

(현황) 충남교육청은 2019년 회계연도의 경우 지방공무원 국외체험연수 4건, 학교시설 선진학교 국외연수 1건, 지방교육재정 담당자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사례연구 1건 등 총 7건의 프로그램에 3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되어 실적이 없음

(문제점) 이 프로그램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수 등 기간이 7일에서 10일 등으로 지극히 단기여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교육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교육자치 역량의 제고에는 크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검사의견)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단기의 국외연수사업은 적정규모로 계속 추진하면서, 특히, 최근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2. 1. 13)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국제교류 및 협력) 가목(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목(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등 신설된 해외사무와, 이를 위한 동법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등 새로운 지방자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자치 공무원들의 해외사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자치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교육관련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의회위원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사업설계 시 그 대상국을 영국 및 미국 등 지방교육자치 선진국으로 하고, 기간도 최소 1년 이상(회계연도 및 회기 1년 고려)의 장기 연수로 하며, 연수 대상 선발 시 10년 내외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각각 대상국별 적어도 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참고> **재원조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충청남도교육청은 200억 5천 7백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중 일정액을 장기 국외장기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계상할 수 있을 것임

3)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및 관련 교육 강화 (소관: 민주시민교육과)

□ 현황 또는 문제점

- 학교 내외에서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생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초·중·고 학교급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부재와 교사의 지도 역량이 부족,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상 결여 등으로 인하여 체계화된 학생자치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의 참여 의지가 위축됨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사업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제5조(기본계획),
-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등)
- 2021년 주요업무계획
- 2021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 사업비 결산현황

(단위: 원)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학생 생활지도지원	민주시민교육지원	1,379,036,000	1,375,473,930	3,562,070

〈검사의견 4〉

- 학생자치 활동에 대하여 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시간을 지정하거나 학습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필요
-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초·중·고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
-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위한 학생·교사 대상 해외 연수 추진

참고자료

〈민주시민교육 중 의회 관련 사업 현황〉

① 의회 관련 프로그램

- 운영개요
 - 프로그램명: 지역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과정
 - 주관: 충무교육원
 - 대상: 충청남도내 중학생 100명
 - 주요내용: 사회참여활동, 충청남도의회 방문, 정책 제안 워크숍 등
- 예산: 7,950천 원

② 의회 관련 교과서 교육 내용

핵심개념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공통사회	법과 정치
민주주의와 국가	·민주주의 ·지역 사회 ·공공 기관 ·주민 참여 ·지역 문제 해결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	·정치 ·민주주의 ·정부형태 ·지방 자치 제도	·시민 혁명 ·인권 보장 ·인권 문제	·정부 형태 ·국가기관 ·지방 자치
정치과정과 제도		·생활 속의 민주주의 ·민주 정치 제도	·정치과정 ·정치 주체 ·선거 ·시민 참여		·정치과정 ·정치 참여 ·선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4) 권역별영어프로그램 운영 개선(소관: 천안교육지원청)

□ 현황

- 현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21년 말 현재까지 14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천안시 초등학생들을 위한 권역별 실전 영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대상자별 종일 영어체험프로그램으로 하루 6시간 수업

연번	사업내역	금액(천원)	담당자수	참여 학생수	비고
1	권역별프로그램 인건비 및 운영비(중양초)	363,500	7명	4,044명	체험과 놀이를 통한 영어학습
2	권역별프로그램 인건비 및 운영비(소망초)	333,500	6명		
계		697,000	13명	4,044명	

□ 문제점

-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과 놀이를 통한 영어의 흥미를 돋우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나 모든 대상 학생들에게 일회성 학습으로 끝나는 문제점이 있음. 외국어 학습이란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많은 시간 학습에 노출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 됨
- 연 7억여 원의 예산으로 14년간 98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학습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성과분석 관련 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학생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음)
-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정량적 평가에 우위를 둔 사업이라 사료 됨

<검사의견 5>

- 이미 모든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 수업이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불평등 없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학습적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심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일정 기간 지속성이 있는 영어 학습으로 특화하여 진정한 인재 양성의 방안 검토

5) 교육지원청 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타당성 조사 (소관: 천안/공주/서산/금산/부여/서천/홍성/예산)

□ 현황

(금액단위: 원)

항목	천안	공주	서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수영장 관련 매입세액공 제액	0	9,971,079	0	129,420,687	0	6,180,202	0	0
매출여부	매출없음	매출없음	매출없음	매출없음	매출없음	매출없음	매출없음	매출없음

*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고유목적(면세)과 과세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 현재 공주, 금산, 서천 교육지원청은 수영장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으나, 이외 교육지원청 수영장은 수선비 등이 있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 수영장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학생에게 생존수영과 같은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일반인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교육프로그램(부가세법 제26조 1항 6호에 따른 면세)
 - 둘째, 수영장 시설이용료(자유수영)에 따른 매출(과세)

□ 문제점

- 첫째, 지원청 학생수영장마다 매입세액 공제기준이 다름. 수영장 수선비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곳도 있고, 받지 아니하는 곳도 있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서천·공주의 경우에도 금산과 다르게 고유목적사업(면세)과 과세를 안분하여 공제받지 아니하고 있음
- 둘째, 최근 수영장 강습료(교육용역 면세)와 시설이용료(과세용역)의 조세심판원 판례에도 시설이용료의 경우 부가세법 제14조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환으로 면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하여야 함
- 조심-2019-구-2922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 용역 제공대가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시설이용 등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용역 제공의 일환으로서 관련 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20-구-1021에서 쟁점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교육 관련시설에 해당하며, 실제 수영강습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일부 허용된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함

<점사의견 6>

- 지원청 산하 학생수영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지원청 산하 학생 수영장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생존수영교육, 일반인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영교육 프로그램 매출 구성, 설립 목적 등을 조사하여 실제 수영교육이 주된 용역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수영강습이 주된 용역으로 판단되면 수영장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면세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여야 함
 - 또는 주된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할 시 고유목적사업(면세)과 과세(시설이용료)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함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6) 방과후 등 교육지원 개선(소관: 천안교육지원청)

□ 현황

- ① 추경 최종편성 후 '예산현액': 219,000,465천 원
- ② '0302 방과 후 등 교육지원액': 870,000천 원
- ③ 학생 수: 91,161명
- '예산현액' 대비 '0302 방과후 등 교육지원액' 비율 (②/①): 0.3973%

□ 문제점

-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천안교육지원청의 '0302 방과 후 등 교육지원'의 예산 절대액이 작아,
 - 따라서 충남교육청 산하 다른 시(市) 단위(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계룡, 당진)의 최종 추경 '예산현액' 대비 '0302 방과 후 등 교육지원액' 비율이 0.7925%임에도 천안은 0.3973%로 낮은 편이며
 - 이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초.중.고 총 학생 수를 적용하여 학생 1인당 '0302 방과후 등 교육지원액'을 계산하면 아산~당진 등 다른 시(市) 단위 평균이 31,775원 인데 천안은 9,544원으로 작은 편임

<검사의견 7>

-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방과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공(公)교육기관이 맡아서 지도하는 교육체계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통한 평생교육 체제 환경 구축에 일조하고
 - 개인별 수준과 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학생의 발전을 도모하며
 - 저(低)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 요구 증대를 충족하고
 - 저렴하고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私)교육비 경감 유도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 등
-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의 '방과후 등 교육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별첨: '예산현액 대비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비교 자료 참고

[참고자료]

‘예산현액’ 대비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비교

(단위: 명, 천원)

구분		천안	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계룡	당진	합 계	아산~당진 합계
예산현액		219,000,465	168,885,347	52,416,089	58,920,508	83,968,585	76,366,541	79,558,647	739,116,182	520,115,717
방과후등교육지원	학생 수	91,161	47,559	11,174	9,490	21,432	19,569	20,502	220,887	129,726
	0302 방과후등 교육지원	870,000	936,605	357,860	568,366	700,000	1,040,600	518,670	4,992,101	4,122,101
		0.3973%	0.5546%	0.6827%	0.9646%	0.8336%	1.3626%	0.6519%	0.6754%	0.7925%
	210 운영비	200,000	431,605	187,970	188,306	185,000	202,600	158,000	1,553,481	1,353,481
		0.0913%	0.2556%	0.3586%	0.3196%	0.2203%	0.2653%	0.1986%	0.2102%	0.2602%
	620 학교회계 전출금	670,000	505,000	169,890	380,060	515,000	838,000	360,670	3,438,620	2,768,620
		0.3059%	0.2990%	0.3241%	0.6450%	0.6133%	1.0973%	0.4533%	0.4652%	0.5323%
	학생 1인당	9.544	19.694	32.026	59.891	32.661	53.176	25.299	22.600	31.775

※ 학생 수 기준: 2021. 3.1.자 유·초·중·고·특기타학교 학생 수

7) 민간위탁사업 운영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2021년 민간위탁 사무 현황

(금액단위: 천원)

소관	위탁사무명	의회 동의사항				21년 예산액		성과 평가	의회 동의
		회기	동의기간	사업비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308	19.01.~ 21.12.	19년	206,104			완료	2022년 추진 시 필요
				20년	206,104				
				21년	206,104	21년	235,00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07	19.03.~ 22.02.	19년	938,000			완료	완료
				20년	938,000				
				21년	938,000	21년	920,000		
	331	22.01.~ 23.12.	22년	1,100,000					
			23년	1,100,000					
민주시민교육과	고위험(자살)군 학생 및 가족 심리 치유 지원 사업	307	19.01.~ 21.12.	19년	60,000			필요	2022년 추진 시 필요
				20년	60,000				
				21년	60,000	21년	60,000		
	학업중단예방 위탁형 대안교육	307	19.01.~ 21.12.	19년	100,000			필요	2022년 추진 시 필요
				20년	100,000				
				21년	100,000	21년	100,000		
	인성교육 우수 민간 단체 위탁사업	307	19.01.~ 21.12.	19년	150,000			필요	2022년 추진 시 필요
				20년	150,000				
				21년	150,000	21년	150,000		
	학업중단예방 대학 연계 대안교육 직업 위탁 교육	316	20.03.~ 22.12.	20년	140,000			필요	불요 (기간 잔여)
				21년	200,000	21년	140,000		
				22년	200,000				

소관	위탁사무명	의회 동의사항				21년 예산액		성과평가	의회 동의
		회기	동의기간	사업비					
미래인재과	충남e-영재교육원	324	21.03.~ 22.02.	21년	64,000	21년	64,000	완료	완료
		330	22.03.~ 23.02.	22년	64,000				
	충남다문화영재교육원	324	21.03.~ 22.02.	21년	60,000	21년	60,000	필요	불요 (일몰 사업)
총무과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326	21.05.~ 24.04.	21년	266,667	21년	266,667	불요 (신규)	완료
				22년	400,000				
				23년	400,000				
				24년	133,333				

※ 의회 동의: 의회 동의 기간의 만료 도래 예정 사업 중 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

※ 일몰 사업: 일몰 사업인 경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

3.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참고자료

[법적근거]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과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고이월비로서 이월 사용이 가능함(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사고이월의 전형적인 예)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2항)
 -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①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

※ 결산서 895쪽부터 909쪽까지 참조

4. 계속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지방자치법 제143조)

[의무적 계속비 편성사업]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계속사업)으로서 완성이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42조).

※ 결산서 753쪽부터 894쪽까지 참조

5. 명시이월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임(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 제도는 회계연도를 넘어 그 집행이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임. 의회가 명시이월비로 승인하면 이월된 회계연도에서의 예산심사가 면제되고, 이월된 예산은 배정절차 없이(이월과 동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간주) 바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됨. 사업추진 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면밀한 사업 준비와 집행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선호하는 사업집행방법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명시이월비 예산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임.

[운용례(국가)] 명시이월비 제도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행위가 당해 연도 안에 종료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경우 사업내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의 장비획득사업은 당해 사업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장비나 수리부속이 많아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에 맞추어 무리하게 외산장비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리한 도입여건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임.

※ 결산서 895쪽부터 909쪽까지 참조

<검사의견 8> 이월사업에 대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 지양
(소관부서: 예산과, 학교지원과, 시설과, 천안아산교육지원청)

□ 현황

○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발생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3건)	12,283,410	9,097,456	998,428	0	0	998,428	2,187,526	
가칭 성성2유 (천안 꽃마루)신설 공사 (천안)	8,719,489	6,889,356	0	0	0	0	1,830,133	지급할 공사대금 미이월에 따른 집행잔액
거산초등학교 교사 개축 및 수선공사 설계 용역(아산)	296,581	3,866	46,170	0	0	46,170	246,545	지급할 설계비 대금 미이월에 따른 집행잔액
영인중 개방형 다 목적 체육관 증축 공사(아산)	3,267,340	2,204,234	952,258	0	0	952,258	110,84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문제점

-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현황¹⁾을 살펴보면, 가칭) 성성2유 (천안꽃마루)신설공사 외 2건에서 집행잔액이 2,189,766천원이 발생됨.
- 세출 예산의 이월²⁾은 다음연도의 정확한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가칭 성성2유(천안꽃마루) 신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액 8,719,489천 원 중 6,889,356천 원을 공사대금으로 집행한 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액인 1,830,133천 원을 담당자의 업무수행 미흡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지 않아 불용 처리됨
→ 이후 공사대금 집행을 위하여 2022년 제1회추경예산에 1,830,133천원을 다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거산초등학교 교사개축 및 수선공사 설계용역” 예산액 296,581천 원 중 3,866천 원을 설계용역 대금으로 집행한 후, 잔여금액 292,715천 원 중

1) 2021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청결산서의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서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검토한 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특성 상 대부분 단일사업이 아닌 여러 건의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단일사업으로 파악된 위 3건에 대하여만 검토하였음

2)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구분하고 있음

46,170천 원만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고 잔액 246,545천 원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미흡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하지 않아 불용 처리됨

→ 미지급된 설계용역대금 246,545천 원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

- “가칭 아산학생수영장형 체육관신축공사”는 예산액 3,267,340천 원 중 2,204,234천 원을 집행한 후 계속비로 952,258천 원을 이월하면서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110,848천 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이월사업비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검사의견 8>

- 앞으로,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확정 시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람,
- 담당자의 업무수행 미흡으로 집행되어야 할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 예산 및 사업추진부서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고
 - 이월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검사의견 9> 이월액 확정 시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수정하는 사례 지양
(소관부서: 예산과, 천안·공주·보령교육지원청)

□ 현황

- 2021년 확정된 명시이월액 수정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소관부서)	의회의결	확정액	수정액	증감액	수정일자 (사유)
계(1건)	704,747	641,285	641,153	△132	
교사 개축(보령)	704,747	641,285	641,153	△132	22.01.13.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집행)

- 2021년 확정된 사고이월액 수정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소관부서)	확정액	수정액	증감액	수정일자 (사유)
계(3건)	704,228	279,348	△424,880	
학교신증설(천안)	83,564	74,271	△9,293	22.01.13.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집행)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공주)	135,888	171,488	35,600	22.01.13. (자재수급 지연에 따른 예상대비 집행액 감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보령)	484,776	33,589	△451,187	22.01.13.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집행)

□ 문제점

-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교육부, 2021.8)」에 의하면 이월액 확정 요구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하고, 이월액 확정은 예산부서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1년 이월액 확정기간인 2022년 1월 10일 이후에 수정한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이 1건 641,153천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3건 279,348천 원임
- 보령교육지원청의 “교사개축사업”의 경우 도의회에서 2021년 12월 16일 704,747천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는데도, 2022년 1월 13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 집행하였다는 사유로 641,153천 원으로 수정등록 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인 천안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증설사업”외 2건도 2022년 1월 13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집행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79,348을 수정 등록하였음

<점사의견 9>

- 앞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시이월사업과 집행부서에서 확정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집행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수정등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육부의 기준에 맞게 법정기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6. 채무부담행위

참고자료

[법적근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함.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재난복구 긴급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함

※ 해당사항 없음

7. 예비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긴급성)**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보충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44조)

[참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은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름.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그 지출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출행위가 무효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8. 성과보고서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국가) 성과관리제도는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운용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관리[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정부업무평가기본 법제2조제6호)을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함
- (지방)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령(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임(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성과 목표,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성과 평가와 그 지표, 성과 평가 결과의 반영,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미국) 미국은 성과관리의 대상을 행정부, 정부기업 및 독립시설로 한정하고, CIA, 감사원, 우편국 및 우편규제위원회, 입법부 및 사법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거> Part 6 of OMB Circular No. A-11(2021) : Part 6(Performance Management) of this Circular, agency includes executive departments, government corporations,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s but does not include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nd 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are not subject to these requirements. In cases where sections of Part 6 guidance are applicable only to a subset of executive departments, government corporations,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s, the section will specify to which subset of agencies the guidance applies.

<점사의견 10>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교육 건의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제고(소관부서: 예산과,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 의뢰함
- 지방정부 성과목표관리체계 도입의 주요 목적은 성과정보를 예산배분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사업(또는 부서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무수행의 책임성 제고에 있다 할 것임
-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6개(8.45%), 달성 60개(84.51%), 미달성 5개(7.04%)이고 목표 달성율은 92.96%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6년간 성과 달성도 현황 】

(단위:개, 억원)

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결산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16	5	18	68	12 (17.6%)	46 (67.7%)	10 (14.7%)	3조 0,403
2017	5	18	80	10 (12.5%)	57 (71.3%)	13 (16.2%)	3조 2,187
2018	5	17	64	2 (3.1%)	51 (79.7%)	11 (17.2%)	3조 6,847
2019	5	15	68	5 (7.4%)	48 (70.6%)	15 (22.0%)	4조 0,714
2020	5	15	67	10 (14.9%)	51 (76.1%)	6 (9.0%)	3조 7,832
2021	5	15	71	6 (8.45%)	60 (84.51%)	5 (7.04%)	4조 2,509

- 달성등급: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 달성(100~130%), 초과달성(130% 초과)

【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 및 목표달성 세부내역 】

(단위: 개, %)

연번	전략목표명 (수)	성과목표수 (정책사업목표명)	지표수 (A)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율 (B+C)/A
계	5	15	71	6	60	5	92.96%
1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6	0	6	0	100.00%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	0	4	0	100.00%
		교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 하겠습니다	10	1	7	2	80.00%
2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0	0	9	1	90.00%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4	0	4	0	100.00%
		미래역량을 기르는 국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	1	2	0	100.00%
3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 겠습니다	2	1	1	0	100.00%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2	0	1	1	50.00%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4	2	2	0	100.00%
4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4	0	3	1	75.00%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 하겠습니다	6	1	5	0	100.00%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6	0	6	0	100.00%
5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 겠습니다	3	0	3	0	100.00%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	0	3	0	100.00%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	0	4	0	100.00%

《문제점》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미흡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과거실적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비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목표치가 도전적·합리적 수준임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설정 근거를 작성해야 함

- 아래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초과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6건 중 「세계시민교육실시율」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의 보편적인 가치와 실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
- 하지만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 목표치에 반영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도 전과 같이 성과지표명을 『세계시민교육실시율』로 정하고 있어 성과지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초과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1년	'20년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이수율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자 수/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취업희망자 수)×100	목표	20.00	-
		실적	51.63	신규
		달성률(%)	258.15	-
세계시민교육 실시율(교(학교))	(초·중학교 세계시민 교육 실시 학교수/초·중학교수)×100	목표	41.05	-
		실적	94.24	신규
		달성률(%)	229.57	-
교원 AI·SW교육 직무연수 이수율(명(인원수))	(AI·SW 교육연수 이수자수/전체 초등 교원수)×100	목표	36.38	-
		실적	47.92	신규
		달성률(%)	131.72	-
학생환경동아리 구성율(교(학교))	환경동아리 운영 학교수/전체학교수×100	목표	36.41	-
		실적	100.00	신규
		달성률(%)	274.64	-
SNS 팔로워 수 증가율(명(인원수))	((당해년도 SNS 팔로워 수/전년도 SNS팔로워 수)-1)×100	목표	5.02	4.03
		실적	40.66	16.53
		달성률(%)	809.96	410.17
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회(횟수))	진로체험 참여 중·고등 학교 학생 수(누적)/전체·고등학교 학생수	목표	1.00	0.27
		실적	2.31	2.24
		달성률(%)	231.00	829.63

② 목표치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노력

- 성과분석시 성과를 초과달성(130% 이상)하였거나 미달성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 도출을 위해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아래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보면, 미달성 5건 중 「행복교육지구지정운영률」의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어 부적절하다 사료됨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1년	'20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참여율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참여 유치원수/전체 사립유치원수)×100	목표	99.19	-
		실적	99.16	신규
		달성률(%)	99.96	-
각급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장애이해교육 실적 등록 학교수/충남교육청소속 각급학교 수)×100	목표	65.07	-
		실적	64.94	신규
		달성률(%)	99.80	-
행복놀이 실시율	(행복놀이실시 학교수/초등학교수)×100	목표	94.77	93.10
		실적	81.99	68.93
		달성률(%)	86.51	74.00
직업계고 학과 개편 재구조화율	(학과 개편 학교 수/직업계고 학교 수)×100	목표	18.42	18.42
		실적	15.78	18.42
		달성률(%)	85.66	100.00
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률	(행복교육지구 운영 시·군 지자체 수/충남 전체 시·군 지자체 수)×100	목표	100.00	93.33
		실적	93.33	93.33
		달성률(%)	93.33	100.00

③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부적정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담당 부서가 달라서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성과지표를 관장하는 예산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의 개선권고 사항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21 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2021.12, 교육부)에 의하면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부서 지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같은 부서에서 총괄작성관리」를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 및 성과계획서를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로 단일화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점사의견 10>

① 성과목표관리제도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건의

-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는 성과관리제도의 중심내용으로써, 그 취지에 따라 성과보고서상의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성과목표관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실적이 매우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지표선정 등 업무가 전반적으로 해마다 전례 답습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향후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성과목표관리제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본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② 성과보고서 검사 종합의견

구 분	개선 권고사항
성과 관리체계의 적합성	① 상위 전략목표 또는 정책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② 추경을 한 경우 당초 목표를 상향/하향 조정할 것
성과지표의 타당성	①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기간별 연속성을 유지할 것 ② 외부요인으로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부서의 업무실적으로 볼 수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③ 달성이 100% 보장되어서 성과로 볼 수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성과 측정방법의 적합성	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②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 말 것 ②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실적치의 정확성	① 당해연도 실적치를 허위보고 하지 않을 것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① 유효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측정산식을 개발할 것 ② 부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실적으로 집계하지 말 것
실적치 환류의 적정성	① 초과달성(130% 이상) 및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하게 할 것
결산검사결과와 연계성	① 지난 결산검사 결과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의 반영여부를 충실히 기재할 것

<검사의견 11>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개선 (소관부서: 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 현황

- 실적이 초과 달성된 항목이 6개인데, 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보다 중요한 분야로 판단되는 「장애 학생 현장 실습 이수율」 [제53쪽 (10)]과 학생의 장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진로 체험 참여 횟수」 [제143쪽 ①번]이 포함되어 있음
 -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장애 학생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 이수율
<측정산식>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참여자 수」 /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취업 희망자 수」 × 100」
 - 학생 1인당 진로 체험 참여 횟수
<측정산식> 「진로 체험 참여 중.고등학교 학생 수(누적)」 /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 수」

□ 문제점

- 특수학교(급) 고3 및 전공과 장애 학생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 이수율
 - 목표 20.00, 실적 51.63, 달성율(%) 258.15 (신규 항목)
- 학생 1인당 진로 체험 참여 횟수
 - 목표 1.00, 실적 2.31, 달성율(%) 231.00 (전년도 829.63)
 - ☞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중요한 분야임에도 목표를 보수적으로만 설정하였기에 실적이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검사의견 11>

-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생의 올바른 조기 진로 결정에 도움이 중요한 바, 이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지니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의 업무 추진 실적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성인지 예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조, 예산에 있어서의 성평등).

<검사의견 1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개선과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소관부서: 예산과, 재무과)

□ 총괄 현황(3개년도 비교)

1. 사업수 및 예산액, 집행률 증감 현황

- 충청남도 교육청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대상사업수는 54개, 예산현액은 107,214백만원, 집행률은 97%임
- 최근 3년 동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사업 수와 예산액에서 증가 추이에 있음. 집행률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 예산 집행률(93.6%) 대비 성인지 대상사업의 집행률(97.0%)은 3.4%p 높은 것으로 보고됨

<최근 3개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성인지 예산액 및 결산 집행률(2019년~2021년)>

연도	사업수(개)	예산액(백만원)	예산현액(백만원)	집행률*
2021년	54	105,714	107,214	97.01%
2020년	49	65,592	73,465	96.90%
2019년	44	41,488	70,790	94.40%

*집행률 산식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임

2. 성과목표 달성률

- 충청남도 교육청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54개 중 달성된 성과목표는 36개, 미달성된 성과목표는 18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66.7%임
- 최근 3년 동안 성인지 결산을 통해 나타난 성과목표 달성률은 2019년 대비 2020년은 9.7%p 상승, 2020년 대비 2021년은 3.5%p 상승하여 다소 상승세가 둔화된 측면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향상되는 추세임

<최근 3개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수 및 달성률(2019년~2021년)>

연도	성과목표 수(개)	달성된 성과목표 수(개)	달성률*
2021년	54	36	66.7%
2020년	49	31	63.2%
2019년	44	23	53.5%

*달성률은 성과목표 수 대비 달성된 성과목표 수임

3. 2021성인지결산 대상사업 분류별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결산 평균 집행률은 97.0%로, 54개 사업 중 23개 사업의 집행률이 100%를 나타내어 사업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가장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81.6% 집행되었음
- 사업분류별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성과목표는 31개이며, 이 중 미달성된 성과목표는 7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77.4%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8개의 성과목표 중 6개를 달성하여 75.0%의 성과달성률을 나타냄. 교육부 지정사업은 15개의 성과목표(지표)에서 9개를 미달성하여 세 유형의 분류기준영역에서 가장 낮은 성과목표 달성률(40%)을 기록함

〈사업유형분류별 예산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률〉

사업유형분류	전체			달성		미달성	
	개수	집행률	달성률	개수	집행률	개수	집행률
성별영향평가사업	31	97%	77.4%	24	97%	7	98%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8	100%	75.0%	6	99%	2	100%
교육부 지정사업	15	99%	40.0%	6	100%	9	99%
자체선정사업	0	0	0	0	0	0	0
총합계	54	98%	66.7%	36	98%	18	97%

4. 2021성인지결산 대상사업 정책분야별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

- 성평등 정책분야 중,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분야의 사업 수가 31개로 가장 많고 「일생활균형 사회기반조성」 분야의 사업 수가 1개로 가장 적음. 각 정책분야별 성과목표 달성률 중 가장 높은 분야는 1개 사업이 포함되어 1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분야임. 가장 낮은 달성률을 나타낸 분야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 분야로, 7개 사업 중 4개 달성, 3개 미달성한 사업을 포함하여 57.1%의 달성률을 나타냄

〈정책분야별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률〉

정책분야	전체			달성		미달성	
	개수	집행률	달성률	개수	집행률	개수	집행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31	96.4%	67.7%	21	95.9%	10	99.6%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	97.6%	57.1%	4	98.5%	3	95.3%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	4	97.0%	50.0%	2	99.8%	2	96.8%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99.8%	100 %	1	99.8%	0	0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1	98.6%	72.7%	8	97.9%	3	99.9%
총합계	54	97.0%	66.7%	36	96.7%	18	98.0%

5. 최근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최근 3년 연속하여 성과목표 미달성한 사업은 54개 사업 중 6개로 11.1%에 해당함.

<최근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세세부사업명	주관부서	결산서 성과지표	지표변경여부	목표치	실적치
중등교원 직무연수	천안교육지원청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63.0%	61.6%
특수교육방과후학교지원	교육국 교육과정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성인지 교육 이수율	변경지표	100.0%	90.6%
외국어교육센터운영	당진교육지원청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55.0%	50.0%
산업체맞춤형교육지원	교육국 미래인재과	마이스터고 여학생 현장실습 참여율	변경지표	80.0%	74.6%
청소년단체활동지원	당진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50.0%	45.9%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학생교육문화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56.6%	54.8%

□ 문제점

1. 성인지 결산서 정보의 신뢰성은 갖추었으나 수혜분석 및 성과목표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됨. 즉 다수 보고서가 성별수혜분석 및 성과평가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었음

○ 충청남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는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와 대부분의 정보와 분석내용을 일치시킨 것을 확인하였음. 다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에 잘못 접근한 분석이나 정보의 오류까지 모두 수정 없이 제시하고 있어, 기계적이고 단편적인 형식상의 일치로 그침.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잘못 분류된 사업들

<양성평등정책사업으로 잘못 분류된 사업들>

세세부사업명	주관부서	집행액 (천원)	성과지표	지표변경여부
초등교원 직무연수	천안교육지원청	49,224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특수(통합교육)직무연수	아산교육지원청	9,036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중등교원 직무연수	천안교육지원청	20,783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과학교원연수	교육국 미래인재과	88,445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자 만족도	변경
영재교육운영	교육국 미래인재과	535,289	영재교육 여학생 참여율	변경
취업기능강화사업	교육국 미래인재과	5,908,674	특성화고 여학생 현장실습 참여율	변경

○ 이러한 분류 오류는 성인지예결산서의 정보를 통해 성평등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규모와 성평등 집행 효과가 왜곡된다는 문제를 야기함. 그럼에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제도 수용성을 저하시키거나 작성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함. 특히 주관기관이 도교육청의 소관부서가 아닌 지원청일 경우, 대상사업 선정에도 주도성을 가질 수 없고 제도의 목적을 이해할 기회도 부족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분석 내용이나 성과지표를 개선해나갈 동기 부여 장치가 필요함

- 성평등 목표 분야(정책과제)와 성과목표(지표)의 성격이 상이하여,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조치가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들이 많고, 성인지결산서에서는 이러한 성과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달성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결과적으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정보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분석 내용이 부실하여 성과목표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다수 발견됨. 각 사업 별 성과목표가 성별요구 및 수혜분석에 기초하여 성평등 목표와 연계구조를 가져야 함에도 적절치 않은 통계를 제시한 보고서가 많고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책분야(정책과제)와 연계성을 갖지 못하여 성과평가 및 성평등 효과 분석으로서 성인지결산의 의미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정보의 일치성과 관련하여, 예산서의 예산액과 결산서의 예산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치성을 검토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됨. 다음은 가장 큰 금액으로 증가와 감소가 있었던 상위 5개씩을 목록으로 만든 표임

〈추경으로 예산 변경된 사업 목록과 내용 검토〉

	사업명	예산액	추경 반영액	성과지표
예산이 증가한 경우	화장실개선	12,712,966	7,448,429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취업기능강화사업	5,908,674	3,010,810	특성화고 여학생 현장실습 참여율
	방과후과정운영	16,738,969	739,000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성인지교육 이수율
	교육복지우선지원	1,169,731	720,000	교육복지사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유아돌봄사업운영	2,529,999	675,000	유치원 학부모 성인지교육 이수율
예산이 감소한 경우	산업체맞춤형교육지원	1,237,602	-4,989,302	마이스터고 여학생 현장실습 참여율
	지방공무원직무연수	907,026	-483,730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각종특색사업운영	3,064,255	-111,344	마을교육공동체 여성 마을교사 비율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472,912	-100,000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충남교육정책홍보	336,415	-91,440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 남녀평등 코너 게재 횟수

2. 성인지결산서의 성과지표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지 않음

-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71개 중 양성평등 관련 지표는 단 한 개도 없음. 성인지예산서 상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전체 54개 중 8개로 보고되고 있음. 성과지표 중 IV-3의 ‘성교육 교직원 만족도’가 비교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로 측정되는 사업은 교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 의무교육(4시간)인 것으로

파악됨. 그밖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양성평등교육은 총 14시간의 범위에서 ‘성교육’ 과 가정폭력을 제외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있으나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로 나타나지는 않음. 주요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됨

3. 집행평가에서 집행을 낮은 사업 사유 확인

-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수립 시 기획된 성평등 성과목표의 질적 수준 또는 양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반적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을 보인 사업은 이용자 참여식 설계방식을 도입한 혁신 공간조성 사업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일수가 많았고 외부환경 요인으로 당초 수립한 만큼의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차년도 동일한 방식의 사업을 기획할 때는 미진한 집행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인지예산사업 구분 범주가 유효하지 않아, 교육청 예산사업의 성평등 집행 효과를 성평등 목표별, 유형 분류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업유형 분류별로는 교육부 지정사업들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40%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 분류가 각 영역별로 배타적 범주라고 보기 어려움.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중 다수가 교육부지정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임
- 한편, 정책분야별로 가장 낮은 달성률을 나타낸 분야는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분야로, 57.1%임
- 현재의 구조에서 사업유형 분류를 범주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성평등 정책분야 및 과제를 범주로 한 성과목표 달성률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사업들의 성과지표 성격과 성평등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개별 사업들의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등, 성과달성이 미흡하거나 우수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총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세세부사업명	주관부서	결산서 성과지표	지표변경여부	목표치	실적치
교장교감자격연수선발	교육국 교원인사과	교장 · 교감 여성교원 비율		40.0%	44.6%
교원인사위원회회운영	교육국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관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6.7%	37.5%
교권보호위원회회운영	교육국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0%	50.0%
인사위원회회운영	행정국 총무과	인사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38.0%	35.8%
수석교사선발	교육국 교원인사과	수석교사 여성 비율		60.0%	71.5%
특수교육운영위원회회운영	교육국 교육과정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의결)	변경지표	60.8%	62.3%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기획국 예산과	주민의견 설문조사 여성 참여자 비율		77.1%	74.0%

6. 교육지원청의 경우, 주관부서 지정, 대상사업 선정, 지원청 별 성과목표 달성을
및 지표변경 등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이 없어 책임성이나 적극성을 요
구하기 어려운 구조임

- 개별 교육지원청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도교육청 전체 달성률보다 낮거나 높은 것에
대해 거의 검토되지 않고 있음. 또한 지원청의 결산부서 담당자가 성인지결산서에
포함된 각 사업들의 예산서 상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예산 비중이 낮은
사업들이 대부분임

〈검사의견 12〉

1.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 수준을 개선하고, 성인지예산서 분석자료
를 생산하여 결산검사에 제출하도록 제도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함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서 작성 과정에 각 예산사업과 관련된 성평등 목표를 연계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예산사업의 직·간접적 성평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따라서 각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의 사업 정보와
분석내용, 성과지표, 목표치 등은 모두 성인지결산서와 일치해야 함
- 성인지 결산 검사가 성인지 결산서, 즉 예산사업 집행의 성평등 성과 달성보고서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률로 검토하는 체계로서, 성인지예산서 자료가 불량한 경우에, 결산
검사는 실효적 기능을 할 수가 없음. 그러므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작성해야 함
- 성인지예산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추경은 반영하지 않는 반면, 성인지
결산서에는 예산액으로 추경 결과가 반영된 예산액이 자동으로 표출되어 성인지예
산서와 결산서의 예산액이 불일치하므로 추경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 내용을 성인
지결산서에 표현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결산 검사는 성인지 결산서, 즉 예산사업 집행의 성평등 성과 달성보고서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률로 검토하는 체계로서, 성인지예산서 자료가 불량한 경우에
실효적 기능을 할 수가 없음.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인지결산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석내용이 부실하여 성과목표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과 성과
지표들을 제외하고 검토되어야 함. 적합하게 설정된 성과지표로만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할 분석 자료를 결산 검사 시에 첨부하여,
성인지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함

2. 지방재정관리제도 간 연계를 통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지방재정관리제도로써 추진되고 있는 성과예산제도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주요 단위 사업을 최소단위로 한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지자체 재정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두 제도 간 연계 노력을 통해 각 제도들의 운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성과목표를 각 전략목표의 성과목표와 연계하도록 제도운영과정을 조정,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예산제도와 긴밀한 연계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 주요 사업 성과지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 선정과정에 해당 제도 관련자들 간 협의 및 논의 구조를 만들고 작동시켜야 함. 이러한 논의 구조 속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성평등 성과평가를 필수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기능하게 할 정도의 충실한 성인지 결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3. 집행률 낮은 사업의 경우, 해당 원인을 파악하고 차년도 예산 수립 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성인지결산서의 집행실적 분석 항목에 제시해야 함

-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수립 시 기획된 성평등 성과목표의 질적 수준 또는 양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반적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81.6%)을 보인 사업은 이용자 참여식 설계방식을 도입한 학교공간혁신 사업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일수가 많았고 외부환경 요인으로 당초 수립한 만큼의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집행 실적분석 항목에 제시되어야 함, 차년도 동일한 방식의 사업을 기획할 때는 미진한 집행률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도 해당 항목에 제시할 것을 권장함

4. 성인지 결산을 통한 성평등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 성과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특별 성과관리 필요함

- 최근 3년 동안 연속하여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결과보고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미달성 사업의 성과목표(지표) 타당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평가 및 해당 사업의 성별 관련성 등을 종합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점검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5. 교육지원청의 성인지예산제도 적극적 참여와 작성지원체계 마련 필요

- 주요사업의 설명자료에 성인지 대상사업임을 표시하여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 체계 변경할 것과 기관별 성인지결산서에 각 지원청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시하도록 도 교육청에서 안내할 것을 제안함. 또, 주관부서로 지정된 지역의 지원청 담당자는 직접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예산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등,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지원청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Ⅲ. 기금

기금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소계①-②	조성액①	사용액②	
계	138,817	139,551	144,830	5,279	278,368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65	142,795	142,795	0	206,96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4,652	△3,244	2,035	5,279	71,408

- 2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액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9억 6천만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14억 8백만 원임

<검사의견 1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소관부서: 예산과)

□ 현황

(단위: 원)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2020년도	2021년도	계		
합계	64,164,675,760	142,795,483,87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이자수입	4,675,760	455,483,870	460,159,630	0	460,159,630
기타수입	0	0	0	0	0
교특회계 전입금	64,160,000,000	142,340,000,000	206,500,000,000	0	206,500,000,000

- 충청남도교육청이 2020년 조성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2020년 조성 당해년도에는 64,164,675,760원을 그리고 2021년도에는 142,795,483,870원을 교특회계전입금 명목으로 재원 조달하여 기금액을 조성함

□ 문제점

- 기금은 상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목적과 조성계획 및 기금사용계획 등이 정확히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조성목적도 정확하지 않고 목표액은 물론이고 매년 조성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조성된 기금액은 당해연도 말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음
- 또한 매년 조성액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관계로 무분별하게 기금이 조성될 여지가 다분하며 차후 사용목적도 특정되지 않아서 기관장의 의도에 따라 어떤 사업이든 가능한 상태임

<점사의견 13>

- 먼저 본 기금의 사용 목적을 재조정하여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특화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요구
- 기금조성 목표액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간 조성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연도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금조성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

Ⅳ. 개선 권고 사항 목록

연번	결산 감사의견 내용	비고
계	13건	
1	그외수입 중 초과근무수당 환수액 과다	19쪽
2	교육활동 선진국 장기연수 적극 추진 - 교육전문직	24쪽
3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연수 적극 추진 - 지방공무원	26쪽
4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및 관련 교육 강화	28쪽
5	(천안)권역별영어프로그램 운영 개선	29쪽
6	교육지원청 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타당성 조사	31쪽
7	(천안)방과후 등 교육지원 개선	32쪽
8	이월사업에 대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 지양	37쪽
9	이월액 확정 시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수정하는 사례 지양	39쪽
10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교육 건의 및 성과지표 적정성 제고 ① 성과목표관리제도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건의 ② 성과보고서 검사 종합의견(성과지표의 적정성 제고)	43쪽
11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개선	48쪽
1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개선과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① 성인지예산 관련 1.종합분석자료 작성 2.추경 변경 내용 반영 ② 성인지예산과 성과계획서의 연계 작성 ③ 집행률이낮은 사업 원인 파악 및 대안을 성인지결산서에 제시 ④ 성인지 성과평가 환류체계 구축(3년 연속 미달성 사업 집중관리) ⑤ 교육지원청 적극 참여와 지원체계 마련	49쪽
13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목적 구체화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조성 방안 마련)	57쪽

결산검사 활동지원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 정제석

의사팀장 정현미

주무관 손송현

☎ 041-635-5083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장 서동철

경리팀장 양선화

주무관 윤여훈, 이은경, 임영민

☎ 041-640-8211